

# 미국, EU,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에 관한 연구

김 재 봉\*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Jae-bong Kim

〈목 차〉	
I. 서 론	IV. 우리기업에게 주는 영향 및 배상책임
II. 생산물배상책임 개요 및 기본법리	소송의 대응
III. 주요 선진국의 생산물배상책임 관련법규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In the past several years, the rapid growth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irms. Product liability i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to the consumer of a unsafe product.

A consumer has a cause of action based on the privity doctrine, the breach of warranty theories and tort liability theories. The tort liability include intentional deceit, negligence, and strict liability.

Increasing emphasis is being placed on strict liability, so the general trend has been to make it progressively easier for consumers to bring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was first applied in the states(1963), and EU(1987) and Japan(1995) also adopted a new product liability which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general background about product law and to offer general recommendation for how to deal with it.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 a basic theories of the product liability systems.

\*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부교수, 경영학 박사

This paper analyses the provisions and compare the product liability laws and U.S.A, EU, and Japan.

In addition, the paper analyses the impact of the product law on Korean export firms and recommends the defense the product action.

## I. 서 론

오늘날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경영규모의 대형화 그리고 기술의 고도 발달에 따라 기업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는 종류와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기업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와 피해자로부터의 법적인 배상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배상책임 중에서도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및 이용자등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제품의 잠재수요자인 사회일반 대중의 소비자 보호의식의 팽배와 소비자 권익옹호를 위해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제반 입법적 또는 제도적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특히 생산물배상책임은 피해발생시의 배상과 관련된 사후처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민법의 전통적 과실책임이론을 토대로 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동 이론은 고도의 과학적기술이 관련되고 복잡한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야기되는 생산물배상책임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점차 엄격배상책임을 토대로 한 생산물배상책임 법리가 발달되었다.

이러한 법리의 발달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한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부터 제조물책임법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각국이 생산물배상책임법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은 각종 예방대책에 대한 투자 및 배상책임의 부담 등에 많은 지출을 강요하므로 경영채산성의 악화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파산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산물배상책임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논문은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의 개념과 과실·보증·엄격책임 등의 기본 법리체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에 대해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생산물 배상책임법이 우리나라 기업경영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배상책임 소송에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각종 방어 대책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 II. 생산물배상책임 개요 및 기본법리

### 1. 생산물배상책임 개념

생산물배상책임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 기타권리 등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 관여한 자, 즉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sup>1)</sup>으로 제조사 책임 (manufacturer's liability) 또는 공급자 책임 (supplier's liability)이라고 한다.

즉 생산물배상책임은 제조업자, 공급업자의 수중을 이탈된 시점에서 제품에 하자(결함)가 있어야 하며, 구매자,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하며 피해가

〈표-1〉 생산물 결함의 유형

	내 용	예
설계상 결함 (design de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외형, 품질구조의 설계 및 계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함</li> <li>◦ 생산자가 기획 결정한 모든 제품에 내재</li> <li>◦ 안전에 관한 제반 기준이 하일 경우 발생</li> <li>◦ 제품의 안전성, 효용성, 매력성 및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의 기획, 의도적 선택에 의해 발생</li> <li>◦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제품과 유사한 다른 안전제품을 비교</li> <li>- 제품의 위험성과 효용성을 비교 (risk utility balancing tes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충돌에 대비한 안전설계 미비</li> <li>◦ 전동 그라인더에 안전덮개 미부착</li> </ul>
제조상의 결함 (manufacturing de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부품, 제품의 제조, 관리과정에서 인적, 기술적 부주의로 발생되는 결함</li> <li>◦ 제조되는 개개의 제품이나 개별 생산단위에 내재</li> <li>◦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이 생산자의 설명서에 부합되는지 여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물질이 들어 있는 통조림</li> <li>◦ 탄산가스가 과다하게 포함된 콜라</li> </ul>
경고, 지시상의 결함 (failure to warn or instr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 소비자에게 제품사용방법에 관한 지시 및 설명, 제품사용시 발생될수 있는 위험에 관한 경고가 부적절하여 생기는 결함</li> <li>◦ 경고는 합리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위험성 및 유해의 가능성이 클수록 엄격히 적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 폭발물, 완구 사용시 위험성</li> <li>◦ 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경고</li> </ul>
개발위험 (state of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 되었으나 기술발전에 의해 사고발생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해 결함이 인정될 경우 발생되는 위험</li> <li>◦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는 동 결함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면책됨(독일)</li> <li>- 생산자는 지속적으로 동 위험과 예방책을 연구,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후적 주의의무가 있음(미국, 일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 유해성에 대한 기준</li> </ul>
유통과정상의 결함 (defect on distribution chan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유통과정상의 부주의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결함</li> <li>◦ 일반적으로 유통업자가 책임을 부담, 다만,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하도급 관계일 경우 후자도 연대적 책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빵, 우유, 육류 등 부패성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보존문제</li> <li>◦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해서 판매한 경우</li> </ul>

1) 조경환, "영, 미법상의 제조물 책임이론의 발전과 전망," 「해외파견검사 논문집」, 1981, p.43.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인과관계)될 경우에 성립한다.

생산물배상책임은 반드시 결합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발생되므로, 결합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각국마다 제품결합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일괄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즉, 미국은 불법행위법 Restatement 제 402조 (2판)<sup>2)</sup> A (Restatement of the Law of Torts<second> 402 A)에서 결합을 “소비자, 사용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한 경우 그자의 신체나 재산에 부당하게 위험한 상태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라고 규정한다.

EU는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입법지침 제 6조 1항에서 “제품이 합리적으로 의도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을 때 제품의 공급 및 유통시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할 때 결합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일본은 1995년의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 생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하자”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은 제품의 결합에 대해 다소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합은 크게 설계상, 제조상, 지시, 경고상, 개발도상, 그리고 유통과정상 결합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1> 참조).

## 2. 생산물배상책임의 기본법리

법치국가에서 배상책임은 국가의 형벌에 저촉되는 경우 발생되는 형사상 책임과 국가나 공공 단체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 개개인간에 발생되는 민사상 책임으로 양분된다. 제품의 결합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생산물배상책임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손해발생 시 금전적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이다.

특히 생산물배상책임 법리는 미국, 영국 등에서 19세기 초 대량판매, 대량소비에 따라 대두된 배상책임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전된 법리체계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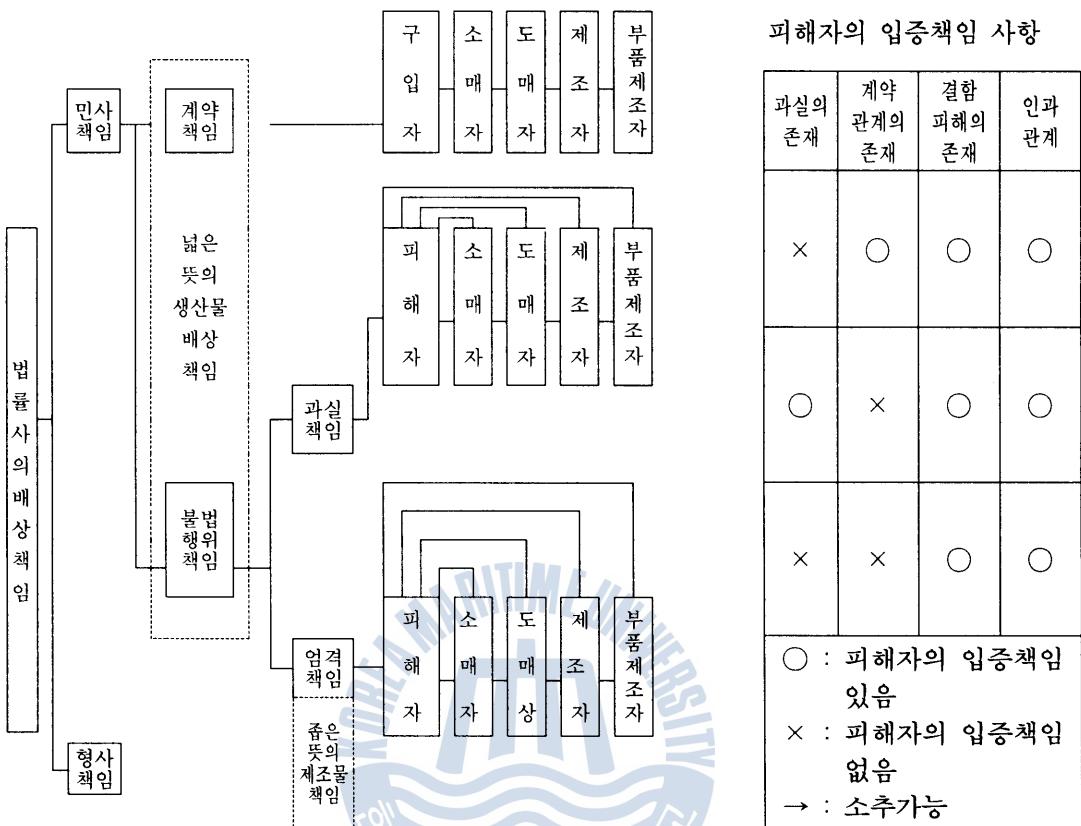
이와 같은 민사상 배상책임법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당사자간의 계약의 존재(privity of contract)의 전제 여부에 따라 계약책임(contract liability)과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으로 구분된다.

### 1) 계약책임

계약책임이란 1842년 Winter Bottom v. Wright 사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법리로<sup>3)</sup> 당사자 간의 계약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품이 계약에 의해 약속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 1997년 개정된 제3차 Restatement에서는 2차와 같이 통일적인 정의 대신에 제조결합, 설계결합, 경고결합 등 세 개의 결합유형에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다.

3) Donald S. M., Rhnald C. H., 'Commercial Liability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American Institute for Property and Liability underwriters, 1986, p. 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법 및 소송사례」, 1995, 5.

(그림-1) 생산물 배상책임의 법적구성

그러나 동 법리는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소비자,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그 학계점이 나타났다.

### 2) 불법행위 책임 법리

계약책임의 한계와 결함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직접적인 당사자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불법행위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생산업자, 유통업자 등)의 과실에 대한 피해자(소비자, 사용자)의 입증책임 유무에 따라 다시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과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양분된다.

### (1) 과실책임

과실 책임은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고, 법리로

씨<sup>4)</sup>, 제조업자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 및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배상책임 청구를 위해서는 소비자 및 이용자가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법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공평한 점과 고도의 과학적 기술이 내포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 (2) 엄격책임

과실책임법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엄격책임 법리가 대두 되었다. 즉 엄격책임은 1963년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사건에 의해 확립된 법리로<sup>5)</sup>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엄격책임은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지만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절대책임(absolute strict liability)<sup>6)</sup>과는 차이가 있다.

### (3)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

과실책임법리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과실책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책임법리가 발전되었다. 즉 보증책임은 제품의 판매시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한 보증내용이 위반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없이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다.

특히 보증은 광고, 설명서, 견본 등에 의해 약속하는 명시보증(express warranty)과 제품의 안정성, 상품성, 적합성을 묵시적으로 보증하는 묵시보증(implied warranty)으로 양분되며 보증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양자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산물배상책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법리를 종류별로 내용, 거증책임, 제품특성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2〉참조).

4) Ibid. p. 86.

5) Ibid. p. 97.

6)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에서 절대책임이란 소비자가 제품이용시 피해를 볼 경우 제품의 결함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표-2〉 생산물배상책임 기본법리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거증책임	제품의 특성	유통 구조	제조업자의 책임정도	법리적용 국가
계약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한 제품이 계약에 의해 약속된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 발생</li> <li>◦ 제조자, 설치자는 법률상 하자 담보 및 채무불이행 책임짐</li> <li>◦ 당사자간에 계약관계 성립이 필수적임</li> <li>◦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간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책임추궁 불가능</li> <li>- 제소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후에는 제조자에 대한 책임추궁 불가능</li> </ul> </li> </ul>	<p>피해자(소비자)가 가해자(생산자)의 제품결합과 관련된 과실입증</p> <p>(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계약상 당사자 관계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광산물, 수공업제품등 단순제품</li> <li>◦ 제조자 임의의 품질기준</li> <li>◦ 제품의 결함발견이 쉬움</li> </ul>	<p>소비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접제품구입</p>	책임이 작다	대부분의 국가
과실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판매과정 또는 사고 발생후 제품회수 등에 있어서 생산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할 경우 발생</li> <li>◦ 매도인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li> <li>◦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 추정하지 못하면 배상책임 추궁 불가능</li> <li>- 제조공정, 유통과정에서의 가해자측의 과실을 전문적, 기술적 지식 부족으로 피해자가 증명하기 곤란</li> </ul> </li> <li>◦ 과실 책임이론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증책임 전환이론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theory) :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li> <li>- 입증책임 경감이론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li> </ul> </li> </ul>	<p>피해자가 가해자의 제품의 결합과 관련된 과실입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생산, 공업제품, 기술집약제품</li> <li>◦ 소비자지향적 품질기준</li> <li>◦ 제품의 수명주기 짧음</li> <li>◦ 제품의 결함발견이 어려움</li> </ul>	<p>소매상, 도매상 등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가짐</p>	책임이 보통	대부분의 국가
보증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법 범주에서 발전된 원리로 제품이 가지는 목시적 또는 명시적 보증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 (엄격책임 주의)</li> <li>◦ 명시보증 :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에 관해 상품으로서 적정성 (merchantability)에 대한 구두, 서면보증</li> <li>◦ 목시보증 : 제품의 성분이나 품질, 소비자의 특별용도에 적합성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li> <li>◦ 메스컴을 통한 광고나 설명서는 명시보증을 성립한다는 근거하에 당사자간 계약 관계의 조건폐지</li> <li>◦ 과실책임 이론의 한계 극복하고 과실책임 원칙에서 엄격책임을 이행되는 중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계 : 계약상 제소기간 및 손해배상의 규모 및 범위에 제한(면책 약관 삽입)</li> </ul> </li> </ul>	<p>피해자는 가해자의 제품결합과 관련된 과실입증 필요없음</p>	상동	상동	책임이 크다	미국

	주요내용	거증책임	제품의 특성	유통 구조	제조업자의 책임정도	법리적용 국가
엄격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보전</li> <li>◦ 제품의 복잡한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가해자측의 과실을 피해자측에서 증명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 발전</li> <li>◦ 피해자인 소비자가 가해자인 판매업자의 과실 또는 보증책임 불이행을 도증할 의무 면제</li> </ul>	가해자가 입증 책임	상동	상동	책임이 크다	미국, EU, 일본

### III. 주요 선진국의 생산물배상책임 관련법규

#### 1. 미국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은 18세기 초까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점진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해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적용범리는 계약책임, 과실책임, 보증책임, 그리고 엄격책임의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1842년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에서 계약당사자 관계가 존재할 경우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해 계약책임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계약책임의 원칙은 소비, 생산양식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급증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 사건에서 인체에 위험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 자는 계약당사자 관계와 무관하게 제품과실로 인해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과실책임원칙이 확립되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을 연장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계속 당사자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통상법 (Uniform Sale Act)과 이를 대체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등 매매법을 근간으로 1960년 까지는 보증위반책임의 원칙이 생산물배상책임에 적용되었다.

동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생산자의 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생산자 과실에 대한 입증 필요 없이 제품의 결함과 피해만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단계로서 발전된 보증위반책임 역시 매매법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보호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보호수단 강구, 생산자의 무조건적인 책임,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960년대에 접어들어 생산물배상책임에 엄격책임원칙을 도입하였다.

즉, 엄격책임원칙은 위험을 가장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고, 피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1943년 Escola v. Cocacola Bottling Co. 사건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 이후 1960년 Hennigsen v. Bloomfield Motor 사건에서 과실이 없어도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배상책임을 묵시적으로 채택하였다. 1963년 캘리포니아 최고 법원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Inc. 사건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엄격배상책임원칙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판결에 따라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결함있는 제품판매에 대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불법행위법 제 402조 A를 인정하였고 마침내 1965년에 공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엄격배상책임 원칙이 미국의 공식적인 생산물배상책임법으로 인정되어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 법률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동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의 생산물배상책임 법리는 엄격책임을 토대로 과실책임과 보증책임을 추가적으로 병행,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표-3〉참조).

한편, 생산물배상책임에 엄격책임원칙이 도입, 적용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건수가 크게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및 소송금액 역시 고액화되고 있다.

〈표-3〉 미국의 생산물책임법의 발전과정 및 특징 비교

법리 내용	과실책임주의	보증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명시보증주의	묵시보증주의	
제기가 된 사건	Winterbottom V. Wright Case (1892) - Privity 관계인 경우 에 한해서만 제조자 과실인정 MacPherson V. Buick - Privity 관계 필요없 이 제조자 과실인정	Baxtor V. Ford Case (1932)	Henningsen V. Bloomfield Moters Case (1960)	Geernman V. Yuba Power Products Case (1963) - Greenman rule
제조자의 책임성립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 제조자의 과실이 입증 된 경우	설명서, 광고 등에 의 해 명시된 제품 안전 성에 대한 명시적보증 위반이 입증된 경우	제품의 안정성과 상 품성에 대한 제조자 의 묵시적 보증위반 을 입증한 경우	제품의 결함(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을 피 해자가 입증한 경우
과실, 결합 입증자	소비자(원매자)	소비자(원매자)	소비자나 제3자	소비자나 제3자
비고	제조업자보호측면이 강함	↔	→	소비자보호측면이 강함

자료 : 권오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 논문, 1995, p. 23.

7) 김재봉, "한국 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경제학 논집」, 한국동남경제학회, 1995, pp. 47-48.

즉 연방법원에 제소된 생산물배상책임소송은 1980년에 7,755건에서 1990년에는 19,428건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평결액도 동기간에 563천 달러에서 1,136천달러로 크게 상승되었다(〈표-4〉참조).

〈표-4〉 미국의 제조물소송 건수 및 평결액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년도	평결소송건수		평균평결액	평결액의 중간값
	100만\$초과	전체건수		
1980	127	7,755	563	225
1981	238	9,071	801	340
1982	280	8,944	851	300
1983	366	9,221	1,246	300
1984	415	10,745	1,467	500
1985	590	13,554	1,091	550
1986	410	13,595	1,007	297
1987	428	45,151	863	265
1988	481	17,140	1,324	485
1989	588	14,348	1,058	400
1990	735	19,428	1,136	300

자료 : Jury Verdict Research, "Current Award Trend in Personal Injury," 1993.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1996. p. 21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관련 보험료의 증대와 보험인수의 거절 등으로 기업의 비용의 상승 뿐만 아니라 생산기업의 증가로 국가경제 전체의 경기침체를 초래하는등 생산물배상책임위기(product liability crisis) 국면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배상액의 최고한도 제한, 결합기준 명확화 그리고 제조물의 안전 내용기간 등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방정부차원에서 통일화 법안(uniform product liability law)의 작성을 모색하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권리·의무의 불균형 해소 ② 제품유통과 관련된 모든자에게 소송제기 ③ 각 주간 무역거래시 비효율성 제거 ④ 소송비용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억제 ⑤ 제조업자의 신기술제품의 판매중단 위기 해소 등을 목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법리를 연방수준으로 통일화 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생산물 배상책임법리에 대한 논란과 개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104 및 제105회 의회에 제출된 생산물 배상책임 관련법은 ① 징벌적 배상금액의 규모제한 ② 비경제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제도 폐지 ③ 소송 및 책임기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9)</sup>(〈표-5〉참조).

8)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제도 운영현황」, 1996, p. 25.

9) George J. Blickley, "Product Liability Law Reform at Last, Maybe," Reed Elsevier, Inc. 1997.

〈표-5〉 생산물배상책임법안의 주요내용

구 분	날짜 및 주요내용
S.100 (제99회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5년 1월 3일 Kasten상원의원이 무역위원회에 S.100(the Product Liability)제출</li> <li>제98회 의회중 공표된 생산물배상책임법안(Product Liability Bill) S.44와 유사</li> </ul>
S.640 (제102회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3월 15일 Kasten, Rockefeller상원의원이 무역위원회에 제출</li> </ul>
S.687 (제103회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3년 3월 31일 Rockefeller상원의원이 무역위원회에 제출</li> <li>비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법리를 부정함</li> <li>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함</li> <li>자본재에 관하여 제조후 25년의 법정책임기간을 설정함</li> <li>원고에 대하여 Penalty를 함</li> <li>정비기관의 승인을 얻은 제조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식품의약 품국(FDA)의 승인을 얻은 약품, 의료기기, 연방항공국(FAA)의 인정을 받은 경비행 기 등은 제조업자가 연반당국에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적 배상금 부과를 금지함.</li> </ul>
HR.956 (제104회 의회 하원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5년 2월 15일 하원 Henry Hyde위원장이 Common Sense Legal Standard Reform Act를 무역위원회에 제출</li> <li>1995년 3월 가결</li> <li>각주 또는 연방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징벌적배상금은 25만달러/경제적손해액의 3배 금액중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li> <li>연방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은 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예외로 함 : FDA defense</li> <li>각주 및 연방 민사에 있어 연대책임제도를 폐지하고, 피고는 귀책성의 기여비율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li> <li>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15년의 책임기간을 설정</li> <li>신체장애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약물사용 또는 주종농도가 50%이상을 초과하여 장해에 기여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제조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li> <li>제조물소송에 있어서 그 제조물을 개조 또는 오용한 경우 배상책임은 감소할수 있음.</li> <li>의료과요소송에서는 위자료 등의 비경제적손해배상은 25만달러까지 제한됨</li> <li>선택적 책임이론 수정</li> </ul>
S.565 (제104회 의회 상원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5년 3월 15일 상원 Rockefeller, Gorton, McConnell, Pressler등 상원의원들이 The 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를 무역위원회에 제출</li> <li>1995년 5월 10일 가결</li> <li>각주 또는 연방의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하여만 적용(연방하원가결법안이 연방 및 주의 쌍방의 민사소송 전체에 적용됨)</li> <li>징벌적배상금은 25만달러/보상적 손해보상액의 2배 금액중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li> <li>상근종업원이 25명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징벌적배상금은 25만달러/보상적 손해보상액의 2배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li> <li>위자료 등의 비경제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제도(joint liability)를 폐지(경제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도가 적용됨)</li> <li>내구재에 대해서는 20년간의 책임기간을 설정</li> <li>소매업자의 배상책임은 그들 자산의 과실 또는 명시보증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li> </ul>

구 분	날짜 및 주요내용
S.648 (제105회 의회 상원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4월 24일 상원 Garton, Rockefeller, Lieberman, Lott등 상원의원들이 Product Liability Reform Act를 무역위원회에 제출</li> <li>◦ 각 주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동법 적용</li> <li>◦ 피해자는 2년 이내에 소송제기</li> <li>◦ 최초 구매자에게 제품 인도 시점 이후 18년간 책임기간(보증기간 있는 제품은 보증기간 까지)</li> <li>◦ 징벌적 배상금은 25만달러/경제적·비경제적 손해보상액의 2배 중 큰금액한도로 결정</li> <li>◦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조합 및 25명미만의 사업의 징벌적 배상금은 25만달러/경제적·비경제적 손해보상액중 적은 금액한도로 결정</li> <li>◦ 비경제적 손실의 경우 연대책임제 금지(법원은 각각의 가해자에게 별도의 배상판결)</li> <li>◦ 제조물의 개조 또는 오용의 경우 기여과실 인정</li> <li>◦ 소비자가 약물사용 또는 알콜 및 약물농도가 50%이상시 제조업자 면책</li> </ul>

자료 : ◦ <http://www.senate.gov/comm/Dem-Policy/general/b-10.html>  
(보험개발원, 전계서, p. 27에서 재인용)  
◦ <http://www.senate.gov/activities/index.html>

또한 최근의 엄격배상 책임원칙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 견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생산물배상 책임법리는 순순한 과실책임주의 또는 현행의 엄격배상책임주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과실책임주의가 불법행위법의 중심논리로 복귀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징벌적배상금, 연대배상책임, 승소사례비, 이중보상원칙 그리고 개발위험방어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sup>10)</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6〉참조).

〈표-6〉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주요 쟁점

주요쟁점	내 용
연대보상책임 (joint & several 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해자중 한 가해자의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전체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책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주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경제적손실 (무형손실)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불 인정 추세</li> </ul> </li> </ul>
징벌적 벌과금 (punitive dam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제를 등한시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하게 부과</li> <li>◦ 징벌적 벌과금을 주 정부에 납부하거나 실제 손해액의 일정율을 한도로 부과, 그리고 징벌적 벌과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사례기준을 정함</li> </ul>
분할 지급방식 (periodic pa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판결액은 일시불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결액이 고액일 경우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분할지급 (structured settlement) 방식 도입</li> </ul> </li> </ul>
승소사례비 규제 (contingent fee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변호사 승소사례비는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액의 30 - 50%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결금액에 따라 차등부과, 일정금액 이상은 법원동의 요구, 피해자가 지급 받는 금액의 일정율로 규정</li> </ul> </li> </ul>
무고한 소송에 대한 벌칙 (frivolous suit penal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의나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경우 상대방 소송관련 비용을 부담함</li> </ul>

10) Lynde Giboney, Lori Kaliber, and Josh Miles, "Product Liability Law and Reform," 1995.

주요쟁점	내 용
이중보상원칙 (collateral source r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측에서 제시할 수 없도록 함에따라 피해자는 동일 사건으로 이중보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이중보상 가능성 입증할 경우 판결액에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감액</li> </ul> </li> </ul>
국가배상책임 (governmental 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정부 관련 사업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li> <li>◦ 정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연대책임을 배제</li> </ul>
주류판매상 배상책임 (dram shop 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판매상의 배상책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상의 과실이나 불법 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li> </ul> </li> </ul>
무형손해액 제한 (noneconomic dam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책임액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액 제한</li> <li>- 책임의 절대액 제한 또는 총 보상액의 상한선 설정</li> </ul> </li> </ul>
개발위험 방어 (state-of-art def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당시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정부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감소</li> </ul>

자료 : 대한재보험(주), 「위험과 보험」, 1993, pp. 27-28에 의거 작성.

## 2. EU

EU 각 회원국은 생산물배상책임소송에 계약 또는 엄격책임, 제한책임(qualified liability), 과실책임 등 불법행위에 기초를 둔 법리를 적용하였다. 불법행위법에 근간을 둔 3가지 원칙은 기본법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피해자가 제품결함 사실과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와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기 다르다.

특히 제한책임원칙은 기본적으로 엄격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으나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 판매 할 당시의 과학기술, 지식수준에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향후 기술발전으로 인해 결함이 인정될 경우(개발위험)에도 생산자를 면책시킨다.

한편 EU는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법규, 보험 및 조세제도, 안전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법적규제, 즉 각 회원국의 관련법규의 통일화라는 좁은 측면에서만 대응하고 있다. 즉, 각 회원국의 생산물배상책임 관련법규의 차이로 인해 회원국간 자유로운 물품이동 제한, 불완전한 경쟁 그리고 결합제품으로 인한 책임소재 혼란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EU는 역내에서의 경쟁조건의 통일화, 교역조건축진,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통일법제정을 모색하게 되었다<sup>11)</sup>.

이러한 목적하에 EU 각료 이사회는 결합생산물배상 지침안을 작성하여 1979년 9월 19일에 공포하였으며, 1985년 7월 25일에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를 통일화시키기 위한 입법지침(결합생산물 책임에 관계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에 관한 각료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85/374/EEC of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EU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들은 각국의 생산물배상책임 관련법규가 지침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법률, 규칙, 행정규정을 제정

11) 보험개발원, 전계서, p. 41.

하거나 기존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등 EU지침을 국내법화 하고 있다(〈표-7〉참조).

〈표-7〉 EU 및 EFTA 회원국의 생산물지침 입법내용

가맹국	입법	입법화상황	선택조항의 도입내용			
			제1차농산물·수렵물	개발위협의 항변	신체장애에 대한 책임한도액	
E U	영국	소비자보호법	'87. 5. 15 제정 '88. 3. 1 시행	×	채용	×
	그리스	제조물책임법	'88. 3. 31 제정 '88. 7. 30 시행	적용	채용	설정(72억384만 드라크마)
	이탈리아	제조물책임 대통령령	'88. 5. 24 제정 '88. 7. 30 시행	×	채용	×
	룩셈부르크	제조물책임법	'89. 4. 21 제정 '88. 5. 2 시행	적용	×	×
	덴마크	제조물책임법	'89. 6. 7 제정 '89. 6. 10 시행	×	채용	×
	포르투칼	제조물책임정령	'89. 11. 6 제정 '89. 11. 21 시행	×	채용	설정 (100억에스쿠드)
	독일	제조물책임법	'89. 12. 15 제정 '90. 1. 1 시행	×	채용 (의약품 제외)	설정 (1억6천마르크)
	네덜란드	민법개정법	'90. 9. 13 제정 '90. 11. 1 시행	×	채용	×
	벨기에	제조물책임법	'91. 2. 25 제정 '91. 4. 1 시행	×	채용	×
	아일랜드	제조물책임법	'91. 12. 4 제정 '91. 12. 16 시행	×	채용	×
E F T A	스페인	제조물책임법	'94. 7. 6 제정 '94. 7. 7 시행	×	채용 (의약품, 식품 제외)	설정 (105페세타)
	프랑스	민법개정법안제출		-	-	-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	'88. 1. 21 제정 '88. 7. 1 시행	×	채용	×
	노르웨이	제조물책임법	'88. 12. 23 제정 '89. 1. 1 시행	적용	×	×
	핀란드	제조물책임법	'90. 8. 17 제정 '91. 9. 1 시행	적용	×	×
	스웨덴	제조물책임법	'92. 12. 17 제정 '93. 1. 1 시행	적용	채용	×
	아이슬란드	제조물책임법	'91. 3. 20 제정 '92. 1. 1 시행	적용	채용	설정 (7000만ECU)
E F T A	스위스	제조물책임법	'92. 10. 9 제정 '94. 1. 1 시행	×	채용	×
	리히슈타인	제조물책임법	'92. 11. 12 제정 시행일은 불명	×	채용	×

주 : 1995년 12월말 현재

자료 : 보험개발원, 전계서, p. 46.

EU 지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960년 살리도마이드 사건, 1973년 도루코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기업에게 엄격책임의 부과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미국의 엄격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표-8〉 EU 생산물배상책임 지침 주요내용.

내 용	
엄격책임	◦ 제조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
적용대상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li> <li>◦ 가공되지 않은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 제외</li> <li>◦ 가맹국 선택에 따라 농산물·축산물 제외</li> <li>◦ 가맹국 선택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전기도 포함 가능</li> </ul>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부품, 원료 생산자</li> <li>◦ 생산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를 부착한 자</li> <li>◦ EU에 상품을 수입한 자</li> <li>◦ 생산자가 불 명확시 공급자</li> </ul>
인과관계입증	◦ 피해자측에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연대책임	◦ 동일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대책임 인정
제품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목적 및 용도에 적합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함으로 간주</li> <li>◦ 다만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안함</li> </ul>
제조업자 면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위험 항변</li> <li>◦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li> <li>◦ 제조물 유통시 결함이 존재치 않거나 유통후 결함 발생</li> <li>◦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닌 경우</li> <li>◦ 결함이 공공기관의 규정 준수에 따라 발생한 경우</li> <li>◦ 유통 당시의 과학기술적 지식으로 결함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li> <li>◦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결함이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자의 지시사항으로 발생한 경우</li> </ul>
기여과실인정	◦ 손해가 제품결함 및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제조업자 책임 경감 또는 면제
피해범위 및 책임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및 재산 손해는 7,000만 ECU까지 인정</li> <li>◦ 무형 손해의 인정을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위임</li> <li>◦ 징벌적 손해 배상은 인정안함</li> </ul>
제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손해 결함 및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소</li> <li>◦ 피해자의 권리는 손해원인이 된 제품이 유통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li> <li>◦ 동 법 시행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li> </ul>
선택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공 농산물과 축산물 포함 여부</li> <li>◦ 개발위험의 면책 또는 개발위험 항변인정여부</li> <li>◦ 신체장애에 대한 7,000만 ECU 책임한도액 여부</li> </ul>
역외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판매 장소보다 피해장소 관할권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침 적용안됨</li> <li>◦ EU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역외국가의 경우 지침적용</li> </ul>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한 EU의 지침은 전문과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크

게 책임원칙, 결합 거증책임, 항변, 보상, 책임한도, 연대책임 등이다. 특히 배상책임원칙과 배상책임규모의 상한선 설정에 각 회원국의 입장이 크게 상이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동 지침 작성시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3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상이한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 그 챕터여부를 각국에 위임시키고 있다.

따라서 EU의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생산물배상책임의 주요 내용에 관한 기본체제(1조 - 14조)를 규정하는 동시에 3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임의적으로 선택(option)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EU 지침에서는 ① 개발위험의 면책 내지는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 (15조 1 항 b) ② 동일한 결합 상품으로 인한 신체 장애에 대해 총액 7,000만 ECU 책임한도 설정여부, ③ 제 1 차 농산물, 축산물의 제조품에 포함여부 (15조 1항 a) 등 3가지 선택사항을 두고 있다<sup>12)</sup>.

앞으로 EU 지침의 발효로 인해 제조업자의 제품 안전도 제고를 위한 비용, 유통관리 및 사후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또한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소송건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3. 일 본

일본의 경우 1995년까지는 산업이익이 소비자보호에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생산물배상책임의 법제화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감, 그리고 동법의 효용성에 대한 관련된 단체들의 의구심등으로 미국과 EU처럼 공식적으로 제정된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법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생산물배상책임법의 특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미비로 인해 생산물배상책임을 민법 제709조에 기초한 1994 제조물배상책임법의 적용에 의한 판례를 통해 전개되었다.

특히 일본은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원칙을 병행하여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송사건 해결을 위해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동 책임과 관련된 구미 각국의 법리를 연구, 소개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즉, 1994 제조물배상책임법 하에서 피해자는 손해, 피해, 손해 및 피해간의 인과관계, 그리고加害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경우 법적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1955년 삼영비소밀크사건 (피해자 : 12,344명)이 발생한 후 1960년대 사리마이드 사건 (피해자 : 309 명), 스문사건 (피해자 : 11,000 명) 그리고 카네기유 중독사건 (피해자 : 15,000명) 등 대규모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가 사회문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5년 EU 지침의 챕터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법제화의 움직임이 모색되었다.

특히 일본은 ①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판례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반성 ② 국민생활의 식의 향상 및 소비자 보호주의의 발전 ③ 1980년 행정개혁안의 규제완화 동향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충분한 대책요구 ④ 제품수입의 대폭적 증가 ⑤ 제품사고의 책임추정에 있어 생산자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기준 요구 ⑥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미국, EU 등 여타 국가와의 보조 필요성 등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13)</sup>.

12) 김재봉, 전계논문, pp. 48-49.

EU 지침이 채택된 1985년 이후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EU 수준과 유사한 생산물배상책임법의 제정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즉, 변호사 단체와 사법학회그룹은 각각 생산물배상책임법 시안을 공표했으며, 사회당, 공명당 등 정당들도 동 관련 법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경제 기획청에 설치된 국민생활 심의회의 제13차 심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생산물배상책임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74년 민법학자들로 구성된 제조물책임연구회에서 제조물배상책임법 요강시안을 작성, 발표한 이후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1995년 7월 1일을 기해 제조물책임법(법률 제85조)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EU의 지침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국 생산물배상책임법 보다는 덜 엄격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은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은 국민생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조물정의, 배상책임, 면책사유, 기한의 제한 그리고 민법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표-9〉참조).

〈표-9〉 일본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보호</li> <li>◦ 국민생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li> </ul>
제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또는 가공한 동산</li> <li>◦ 부동산 유체물이 아닌 에너지, 서비스, 미가공 동산 제외</li> <li>◦ 중고품, 부품, 원재료, 수혈용 혈액제제, 생약진 제외</li> </ul>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생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li> <li>◦ 해당상품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해당상품을 전네준 시기 등을 고려</li> </ul>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생산물을 업으로 하는 제조, 가공, 수입업자</li> <li>◦ 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 표시로 한 자 (OEM 제품공급처, 대량유통업체의 개인상표 상품 판매원도 책임)</li> </ul>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물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 침해</li> <li>◦ 대인 배상책임액 상한선 없음</li> <li>◦ 징벌적 손해 배상금 인정 안함</li> <li>◦ 과실 상계를 중과실에 한정하지 않음</li> </ul>
면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위험 항변</li> <li>◦ 타 생산물의 부품이나 원료로 사용될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경우</li> <li>◦ 결함과 관련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li> </ul>
책임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의 무자를 안 때부터 10년 이내</li> <li>◦ 신체에 축적되는 경우,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의한 손해, 잠복기를 거친 후 나타나는 증상은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권 계상</li> </ul>
민법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적용</li> </ul>

13)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리 현황」, 1993, pp. 22-25.

한편 일본의 소비자 단체와 변호사 협회에서는 현재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①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처음 시판한 시점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② 피해자는 제품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③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는 개발위험항변을 주장할 경우 면책됨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과관계의 추정요건도입과 개발위험 항변시 그 산업에서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최고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sup>14)</sup>.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EU,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책임법리, 제조물, 결함, 제소기한, 개발위험항변, 배상한도액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10〉참조).

〈표-10〉 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 비교

국가 주요내용	미국	EU	일본
책임법리	엄격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제조물범위	자연산물, 동산, 서비스 등 대부분이 포함됨	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	제조가공된 동산에 한함 (백신포함)
결함판단기준	소비자 기대기준 위험-효용분석	소비자 기대기준	소비자 기대수준
입증책임부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제소기한(사고발생일기준책임기한)	1년~6년 (주별로 상이)	사고일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3년
법정책임기한(상품유통일기준)	10년 (많은 주에서 채택)	10년	10년 (누적손해의 경우 손실발생일로부터 10년)
개발도상위험 인정여부	인정 (state of the art)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나 회원국의 선택사항임 (12개국 선택)	인정
징벌적손해배상	인정	부인	부인
책임부담자	제조업자(완성품, 부품, 재료), 공급업자, 자기상표부착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 제조 유통에 관여한 모든자	제조업자(완성품, 부품, 재료), 자기상표부착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제조업자 (완성품, 부품, 재료), 수입업자, 자기상표부착자
배상한도액	설정없음	원칙적으로는 7000만 ECU 그러나 회원국의 선택사항임	설정없음

자료 : MITI, "Guide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1994와 권오성, 전계서, p. 30에 의해 작성

14) Richard Y. Sako, "Japan Adopts Product Liability Law," 1996 ([http://www.faegre.com/areas/areas\\_ib3.html](http://www.faegre.com/areas/areas_ib3.html)).

## IV.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주는 영향 및 배상책임소송의 대응

### 1.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은 대부분 국내생산자와 국내소비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만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출기업 역시 국내제조기업과 동일한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수준이 수출기업 국가보다 높은 지역으로 수출시 수출기업은 생산물배상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up>15)</sup>.

#### 1)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의 증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특히 미국,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통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지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다변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수출액에서 절반정도의 수준이 미국, EU, 일본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EU,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들은 생산물배상책임에 소비자 보호측면을 강조하고 생산, 제조, 수출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엄격책임법리를 이미 제정,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상대로 생산물 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배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수출초기 단계에서 절대적인 수출액도 매우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구성 품목도 농수산물이나 광물자원 등 1차 생산물과 노동집약 단순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따라 오늘날은 수출품목에서 전기, 전자, 기계제품 등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의 구조가 1960년대 1차산품에서 최근들어 생산물배상책임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공산품으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미국, EU, 일본 소비자의 생산물배상책임 소송문제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은 그 특성상 실제사고가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므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양적 팽창과 질적고도화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2) 수출경쟁력 상실

생산물책임법의 엄격한 적용은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업에게는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영체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15) 서현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생산물 책임과 보험,” 「손해보험」, 1993, p. 12.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미국, EU, 일본의 엄격한 생산물배상책임법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원자재 및 시설대체, 품질관리, 연구개발, 배상금 지불, 보험구입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물 배상책임리스크 관리비용은 제품의 가격상승요인으로<sup>16)</sup> 작용하여 미국, EU, 일본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생산물배상책임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수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액에 한계가 없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미국, EU, 일본의 생산물 배상책임법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생존 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지 수입국의 엄격한 생산물배상책임법은 상대적으로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게 더욱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3)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하여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는 엄격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의 생산물 배상책임법은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동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수입국 별로 동일한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생산물상책임 부담 범위가 상이하여 수출기업의 수입을 억제하는 하나의 비관세 장벽이 될 소지가 있다.

즉, 국가별로 생산물배상책임 법리가 상이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자는 각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변형시키거나 각국의 법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추가적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동일한 제품의 수출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없어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국은 생산물배상책임 법리의 차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수입국 정부가 제품의 결함, 피해판정 등에 생산물배상책임 법규를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내제품에 비해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수출기업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다.

## 2.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의 대응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소비자, 이용자 등)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리에 합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생산물

16) 생산물배상책임법이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Richard L. M., "203 Products Liability Prescription Drug Prices in Canada and the U.S.A," 「Journal of Law & Economics」, April, 1997 참조.

의 결합존재, 결합있는 생산물의 사용에 따른 피해발생 그리고 피해와 결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배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행위 등 몇가지 요건을 통해 가해자(제조업자, 유통업자 등)는 법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즉, 제조업자는 기여 및 비교과실(contributory and comparative negligence) 위험인수 (assumption of risk), 개발도상의 위험(development risk), 책임기간(liability period), 그리고 제품의 오용 및 변경(product misuses and alteration) 등의 주장을 통해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항변권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배상책임 법리에 따라 그 유효성에 한계가 있다.

### 1) 기여 및 비교과실

기여 및 비교과실은 피해자의 특정행위를 가해자가 배상책임소송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먼저 기여과실은 결합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관련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과실 개념은 과실책임에 토대를 둔 소송에서는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보증책임 및 엄격책임법리하에서는 동 개념의 적용이 곤란하다.

한편 비교과실이란 기여과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두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액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sup>17)</sup>. 이러한 비교과실의 개념은 다소의 논란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책임과 엄격책임법리하에서 원용될 수 있다.

### 2) 위험인수

위험인수란 피해자가 제품에 내재된 고유의 위험을 인수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배상책임 소송에서 항변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식하고 피해가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제조업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인수항변은 과실책임법리보다는 엄격책임법리하에서 보다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것이다.

### 3) 개발도상의 위험

개발도상 위험은 제품의 결함을 설계 또는 제조당시의 보편적인 과학기술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으로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제조업자는 해당제품을 제조할 당시에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

17) 비교과실은 과실비율 적용방법에 따라 순수비교과실과 수정비교과실로 양분된다. 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경감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가해자의 일정수준과 같거나 적을 때 가해자에게 배상액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전계서, 1996, pp. 12-13 참조.

음을 입증할 경우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도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위험 항변은 제조당시의 환경을 토대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논리하에서 대두된 개념으로 과실책임 및 엄격책임법리하에서 방어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4) 책임기간

책임기간은 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와 법정책임기간(statutes of repose)으로 구별되는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발생일 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소송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 책임기간은 생산물이 시장에 유통된 후 제조업자가 동제품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소멸시효 및 법정 책임기간을 근거로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이론인 과실 및 엄격책임법리 뿐만 아니라 보증책임법리하에서도 방어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

#### 5) 제품의 오용 및 변경

제품의 오용 및 변경이란 이용자가 제품을 제조업자의 의도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소비자가 제품의 잘못된 사용, 지시서 및 경고를 무시한 사용 그리고 제품개조 등이 손해발생의 원인이고 제조업자가 이러한 오용 및 개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오용 및 변경 주장은 과실책임, 보증책임 그리고 엄격책임 법리하에서 모두 유효한 법적대응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6) 권리포기

권리포기란 소비자가 제조업자 및 판매자와 계약을 통해 구입된 제품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포기계약을 원용하여 제조업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생산물 배상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는 권리포기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sup>18)</sup>.

18) 일례로 미국의 통일 통상법(UCC 2-316)에 따르면 권리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imitation of consequential damages or injury to the person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is prima facie unconscionable but limitation of damages where the loss is commercial is not"

## V. 결 론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은 1970년대 이후 소비자 보호운동의 확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입법적, 제도적 조치의 확립에 따라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문제의 거론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63년 최초로 업격배상책임 법리를 토대로 한 생산물배상책임법을 제정, 시행하여 다른 나라의 법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EU는 결함생산물배상 지침안을 1987년에 제정하여 각 회원국들이 동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EU지침과 유사한 제조물책임법을 1995년에 제정,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엄격한 생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에 따라 향후 미국, EU, 일본 등 현지 수입국에서의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문제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생산물 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리 및 미국, EU, 일본의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방어수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영 채산성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의 생산물책임법에 대한 동향 뿐만 아니라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창경, “제조물책임제도와 리콜제도”,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심포지엄, 1996.  
강창경의 2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리콜제도 운영상의 제 문제,” 1996.  
\_\_\_\_\_,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필요성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1996.  
권오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김재봉, “한국수출기업의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 한국동남경제학회, 1995.  
\_\_\_\_\_,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박대위교수회합기념논문집」, 1996.  
김현,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손해보험」, 1995.  
나기훈, “우리나라 생산물책임의 현황과 당면과제,” 「보험학회지」, 1990.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제도 운영현황」, 1996.  
\_\_\_\_\_,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리 현황」, 1993.  
보험개발원 가계보험부, “미국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입법화 동향,” 「보험개발연구」, 동권 4호, 1991.

- 서현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생산물책임과 보험,” 「손해보험」, 1993.
- 이상정, 박진섭,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 지수현, “제조물책임의 입법과 보험의 이무화 문제,” 「손해보험」, 1995.
- 한국법제연구회,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1994.
- 허연, “생산물책임보험 도입에 관한 소고,” 「손해보험」, 1997.
- Anderson, R. A., Fox, Ivan, and Twomey, D. P., 「Business Law」,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92.
- Barker, Drucilla K.,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Products Liability Laws on Underwriting Risk,”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8, No. 1, March 1991.
- Blickley, G. J., “Product Liability Law Reform at Last, May be,” 1997.
-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bel,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 Griboney, Lynde, “Product Liability Law and Reform,” 1995.
- Griffiths, Margaret, LL.B., “Defectiveness In EEC Product Liability,” 「Journal of Business Law」, May 1989.
- Kellam, Jocelyn,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Klunor Law International, 1995.
- Law Office of Herbert Monheit, “Product Liability Cases,” 1996.
- Lieberman, J. K. and Siedel, G.J.,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Harwa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988.
- McCarty, F. W.,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Irwin, 1993.
- MITI, “Guide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1994.
- Neely, Richard, 「The Product Liability Mess」, the Free Press, 1988.
- OECD, 「Products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 Rejda, George E.,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6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1998.
- Sako, R. Y., “Japan Adopts Product Liability Law,” 1996.
- Stanton, K. N., 「The Modern Law of Tort」, Sweet & Maxwell, 1994.
- The council of the EU, 「council Directive 85/374/EEC of 25 July 1985」, 1998.
-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Product Liability Reform Act,” 105th Congress, 1997.